

우리나라 청소년 연기자 보호 제도에 관한 고찰 -2014년 시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분석을 중심으로-

Research for the Legal Protection System of Minor Actors and Actresses -Focused on the Analysis of Popular Culture Art Industrial Development Act-

김정섭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영상연기학과

Jeong-Seob Kim(lakejs@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2014년 7월29일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핵심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조항의 적절성 여부를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비점 등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이 법률은 성매매 알선, 노예계약, 제3자의 수익 편취 금지 등 논란이 되어온 사회적 요구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연령별로 노동시간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다 청소년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연기장면의 사례, 수면권·건강권·학습권 보장의 절차와 방법, 위반 시 벌칙(처벌) 조항 등을 충분히 규정하지 않아 구체성과 적용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미성년 연기자 | 수면권 | 건강권 | 학습권 | 노예계약 | 노동시간 |

Abstract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critically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protection clauses of minor artists which is the core of Popular Culture Art Industrial Development Act enforced from July 29, 2014. The analysis shows that the law accepted the social issues such as the prevention of procuring minor prostitution, slave contracts(unfair long-term contracts), and third party’s profit-extortion. However, the law missing or not specifically stated about age-based differential enforcement of work hours, dangerous acting scenes shouldn’t be forced to minors, right to sleep, health, and study, as well as the penalty regulations in violation of each clause. Consequently, the Act’s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to fully meet above insufficiencies referring to foreign practices.

■ keyword : | Minor Actors | Right to Sleep | Right to Health | Right to Study | Slave Contracts | Work Hour |

I. 들어가는 말

1919년 10월27일 서울 단성사에서 상영된 영화 ‘의리적 구투(義理的 仇鬪)’가 우리나라 영화의 효시인 최초의

의 연쇄극이며, 1956년 5월 상업방송인 HLKZ-TV가 개국작으로 제작·방송한 ‘사형수’가 우리나라 최초의 TV 드라마인 점을 고려하면 ‘아역(兒役)’을 포함한 청소년 연기자의 출연은 영화의 경우 1920년대, 드라마는

195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극에서 아역은 가족의 일원인 어린이나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잠시 보여주는 정도의 역할에 지나지 않았으나, 미디어의 보급 확산과 발달로 극이 활성화 하면서 로틴에서 하이틴에 이르는 청소년 팬 층이 두터워져 청소년 배우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보호대상인 청소년 연기자들의 노동조건을 별도로 규정한 법규가 없어 성인배우들과 마찬가지로 불규칙한 제작 스케줄에 따라 연장 노동은 물론 신체적 성장을 저해하는 밤샘 제작과 새벽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수중 촬영 장면, 무협(武俠)과 싸움 장면, 격한 놀이 장면 등에서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못하여 위험에 노출된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방송심의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배우들이 겪는 폭력, 성추행, 선정적 표현 경험, 인격권과 안전 무시 사례가 발표되고 [1]방송사의 '아동·청소년 출연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야 한다[2]는 연구가 이어졌다. 영화 '도가니'의 제작 과정에서 리얼리티를 강조하기 위해 아역들에게 끔찍한 성폭력 피해 연기를 재연토록 하여 언론의 문제 제기와 함께 국회에서도 대책이 논의되었다[3].

뿐만 아니라 그간 미성년 배우들에 대한 과다 노출과 성적 표현 강요, 수면권 및 휴식권과 인격권, 학습권 침해 등의 사례도 적지 않았다. 문화산업을 성장동력의 하나로 삼고 있는 한류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급기야 2003년 7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어린이 및 청소년 방송출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4]하고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국회의원들이 늘면서 관련 내용을 입법할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결국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조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2014년 1월28일 제정되어, 같은 해 7월29일에 시행되었다. 이전까지는 예술계 노동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을 일괄적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이마저도 제작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였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시행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의 체계화란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드러난 문제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술적 차원에서 내용을 정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계속 이슈로 부각되었던 청소년 배우의 인권, 건강권, 학습권을 비롯한 권리보호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이 법률에 반영된 청소년 예술인 보호 조항이 적절한지, 미비점은 없는지 입체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비판적 관점에서 무엇이 수정, 보완되어야 할지 추후 법률 및 제도 개선에 대한 학술적 시사점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이 방송 심의제도에 집중되어 방송 외의 공연 분야를 포괄하지 못한데다 제도화 이전의 논의 단계에 그쳤다면, 이 연구는 청소년 예술인의 보호 규정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된 이후 해당 법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독창성을 갖는다.

II.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논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하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관련 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 사업자와 해당 부문의 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만 19세 미만인 자”이다. 이 같은 청소년 예술인의 노동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는 청소년 노동의 정의, 즉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미성년자에게 임금을 주고 이들을 고용하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의 노동은 청소년기가 매체를 비롯한 사회적 자극을 예민하게 수용하며 발달 및 성장한다[5]는 점 때문에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배우는 경륜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무대에 오르면 부담감 등으로 인해 평소 갖고 있던 안정된 심리, 인지, 신체 상태와는 전혀 다른 수준과 상황의 긴장감과 같은 변화를 느끼는데[6], 청소년 배우의 경우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에 있는 데다 상황에 대한 판단력과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정도가 더욱 크다.

청소년의 인권과 노동에 대한 보호는 근본적으로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이기 때

문에 헌법에서부터 명확하게 규정하여 특별히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성을 청소년의 기본권 제한의 법적 정당성과 논리로 삼아 이들을 ‘육성의 대상’이라기보다 ‘보호의 대상’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7]. 헌법 제32조 5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건은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원리에 맞춰져 있다. 헌법 제32조에 “노동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규정되었듯이 청소년 예술인들에게도 노동은 회피의 대상이 아닌 권장의 대상인 것이다. 성인의 지도아래 행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은 자신이 소속된 가족과 사회에 문화적으로 통합되는 학습과 적용의 과정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8].

그렇다면 국가별 근로연령의 하한선은 어떻게 될까? 최소 근로연령은 근로의 성격, 해당 근로가 이뤄지는 각 국의 아동 및 청소년 노동 기준에 따라 14세에서 18세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연소자’로 규정하고,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정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기예술, 가요를 비롯한 대중문화의 영역에서는 아역이나 아이돌 그룹 구성원 등 현실적으로 15세 미만의 예술인들이 존재하여 근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바, 이러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 청소년 예술인 보호에 관한 쟁점

한류산업의 활성화로 청소년 배우들의 숫자가 늘고 있으며 이들은 성인배우들과 마찬가지로 단기간의 고강도 프로젝트에 투입되기 때문에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감정노동(emotion labour)’을 수행한다[9]. 하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은 완비되지 못하여 관련 연구들도 이들의 인권, 노동, 교육, 건강 보호 등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배우 등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노동에 관한 쟁점은 크게 인권보호와 노동 제한, 수면·건강권 보장, 학습권 보장으로 나

눌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1년~2012년 청소년 보호관련 방송심의 위반조항이 지상파방송 9건, 유료방송 6건 등 총 15건으로 음악방송의 노출과 선정적인 춤, 드라마와 재연 프로그램에서의 성폭행 등이 대다수였다고 분석하였다[4]. 영화가 발달한 인도에서도 청소년 공연자와 스포츠 선수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초·연장 노동과 선정적 표현 등의 문제가 나타나 이들이 일할 때 이를 방지할 부모와 고용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법규를 정비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10]. 미국에서는 공연과 성격이 유사한 접대 분야에서 일하는 10대 156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비접대 분야의 일자리보다 낮았지만 저임금, 성년과의 차별대우, 감독자와의 불편한 관계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11].

아동이 영화, TV 등에 출연하는 경우 아동의 인지적 능력, 정서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촬영 전 교육, 촬영시간과 환경 관리, 법적·행정적 뒷받침이 필요[5]하며, 촬영 때문에 빠진 학습을 보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원활한 성장과 건강을 위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12]. 그러나 어린이들도 외상 경험을 잘 승화할 회복 탄력성과 발달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쁜 장면을 촬영하면 피해가 심각할 것이란 가정은 지나친 것[13]이란 견해도 있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역 배우나 가수를 망라한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보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내의 첫 법률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해외 주요 선진국의 관련 법규(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를 비교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내용분석 방법 등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조항의 적절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것처럼 청소년 예술인의 활동과 관련된 주요 쟁점인 (1)인권 보호와 노동 제한, (2)수면·건강권 보장, (3)학습권 보장을 내용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의 절차와 체제는 법률의 구성 체제인 ‘장’, ‘절’, ‘조’, ‘항’ 단위별로 법

를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가는 축조심의로 분석하고 이를 다시 해외의 관련 법규와 비교 고찰함으로써 법률의 체계성과 보완점 유무 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제1장 총칙(제1~제5조),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제1절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제6~제18조), 제2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제19~제25조), 제3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제26~제32조), 제4절 행정조치(제33~제35조), 제3장 보칙(제36~제38조), 제4장 벌칙(제39~제4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법률 제2절(제19~제25조)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규정을 담고 있다.

IV. 분석 결과

1. 대중문화예술산업법 분석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정밀 고찰한 결과, 첫째, 청소년 인권 보호와 노동 제한의 관점에서는 국가, 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며 청소년 보호 원칙을 명시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제19조).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 성 매수 금지 및 위해약물, 유해업소, 유해 광고 용역 금지 규정도 명문화하였다(제20조).

벌칙 조항을 명시하여 업무관계를 통해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성매매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 금지 조항(19조 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관계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 금지(19조 2항)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39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 금지(20조 1항)를 위반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기획사 사장이나 업무 관계자가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 관련 법률과 같이 청

소년 예술인을 피해자로 보아 아예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14].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 금지 업종에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알선 행위도 금지하였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계약서」의 연기자용 제21조와 가수용 제18조에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의 관련 조항에는 "연예기획사, 프로덕션, 제작사 등은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계약 체결 시 연령을 확인하고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으며,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노동시간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15세 미만 청소년 예술인은 주당 35시간, 15세 이상 청소년 예술인 주당 40시간 이내로 규정하였다. 제작관련 근로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국외 활동을 위한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제23조에서는 15세 이상의 예술인이 일하는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다.

둘째, 수면·건강권 보장의 차원에서는 대중문화예술 사업자는 청소년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인격권, 수면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토록 하였다. 국외활동 중에도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였다(제21조). 제22조에 15세를 기준으로 주당 35시간과 40시간으로 제한해 제22조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및 새벽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수면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노동에 따른 건강권 침해를 차단하고 성장과 안전을 위협하는 야간 및 새벽 노동을

금지시킨 것이다. 다만 일하는 날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를 받아 당일 자정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부모의 지지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이 크다는 점[15]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는 각각 처벌 조항을 규정하지 않아 제작현장에서 법적 다툼이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률 본래 영역을 벗어나 노동관계법 등 다른 법률을 준용, 해석해야 하는 불편함과 모호성이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학습권 보장의 차원에서 분석하면 제21조에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도록 하였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외국에서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제작자, 학교, 교육당국의 3자 또는 학부모까지 추가된 4자가 모두 요건을 보장한 문서를 제시토록 하였으나 이 법은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생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실천을 담보할 수 없는 선언적 특성이 짙다고 비판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학습권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인격권, 수면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과 함께 나열하여 규정하는데 그쳤다.

이 법의 두드러진 특징은 청소년 예술인의 실질적 수익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사나 대리인이 이들의 임금 등 수입을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25조는 청소년 예술인은 제작업자나 기획업자에게 독자적으로 보수를 청구하고 제작업자나 기획업자는 친권자나 대리인과 계약했다 하더라도 직접 해당 청소년 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문화부로 하여금 계약이 청소년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면 시정명령을 하고 그 내용이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4조)

표 1. 각국 청소년 예술인(연기자) 보호조항 비교 분석

국가	분석 단위	내용
한국	인권 보호와 노동시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 침해 금지, 건전한 인격체 성장 배려 • 청소년 성(性) 매수 금지 및 위해약물, 위해업소 등 광고용역 금지 • 과다 노출, 선정적 표현 행위 강요 금지 • 15세미만 주당 35시간, 15세 이상 주당 40시간 제한

국명	수면·건강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10시~오전 6시 촬영 금지 •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면권 보장 조항 명시
	학습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권 보장 조항 계약 포함 명시(구체적 내용은 없음)
일본	인권 보호와 노동시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허락 하에 만 13세 미만의 작품 제작 관련 근로 허용 • 노동시간은 1주일 40시간 이내, 1일 7시간 이내
	수면·건강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9시~오전 6시 촬영 금지 • 1일 노동시간 6시간 넘으면 중간에 45분간 휴식 보장
	학습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친권자의 동의서, 학업에 지장이 없다는 학교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지역 노동관청의 허락 필요
미국	인권 보호와 노동시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후 15일 경과해야 예술공연 활동 가능 • 출연자, 보호자, 고용주 등 3자가 동시에 노동관련 부처의 심사 후 허가를 받아야 함 • 연령대별 노동시간을 상향, 차등 적용
	수면·건강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장 부모 동행 의무화, 한명의 간호사 상주 의무화
	학습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장 부모, 현장교사 한명 동행 의무화 • 결석할 경우 스튜디오 교원(studio teacher) 또는 교원(면허소지자) 제도 활용
영국	인권 보호와 노동시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세이상 작품 출연시 학교장의 동의 필요. • 촬영이나 공연 21일 전까지 교육관청의 허가 필요
	수면·건강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작업시간 최장 3시간 30분 초과 금지, 휴식은 다음 작업시작 전까지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을 보장 • 5세 미만의 경우 휴식이 없는 공연은 최대 30분 초과 금지
	학습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촬영시 보호자(chaperone) 동반의무 • 출연 학생 일일 최장 3시간 개인교습(반 학생 수 6명 이내)
독일	인권 보호와 노동시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 미만의 아동은 작품 출연 등 활동 불가 • 15세 미만 작품 활동을 하려면 친권자의 서면 동의,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의사의 소견서, 안전예방 조치 등을 담은 서류를 첨부해 주 노동청의 허가 필요 • 미디어 및 교육 전문가가 작품 대본 문제(위해) 여부 검토
	수면·건강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및 촬영시간은 3~6세는 하루 2시간, 6세 이상은 하루 6시간을 초과 금지
	학습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노동청 근로 허가시 수업권 확보 약속서 제출 • 부족한 학교 수업을 학교가 제공한 별도의 교재나 가정교사를 통해 보충 학습 지도
프랑스	인권 보호와 노동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미만 아동 작품 활동 불가, 라이브 공연 무대는 9세 이상만 출연이 가능 •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활동시 부모의 동의서, 촬영 내용 등을 담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의 허가 필요 • 하루 최장 노동시간은 생후 3개월~3세는 1시간, 3~6세는 2시간, 6~11세는 3시간, 12~16세는 4시간으로 차등 적용
	수면·건강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과 연계한 건강관리 중시 • 미성년자의 노동 자정~오전 4시 전면 불허
	학습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허가시 학교장의 허가 필수 • 학습 진도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관리

< 출처: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06)·박석철(2009)을 반영, 분석 >

2.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법률은 구체성과 체계성이 다소 부족하여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의 성숙으로 미성년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호하기 위한 관념이 일찌감치 형성되어 이게 걸맞은 세부 기준을 마련하면서 예술인의 특성과 어려움을 반영하고 각국의 제도에 맞는 인권, 건강, 학습권 등의 보호 장치가 추가되어 오늘날의 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16].

일본에서 노동은 만 13세가 넘어야 허용되나 연예활동은 부모의 허락 하에 13세 미만도 가능하다. 「노동기준법」(1947)에 따라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중예술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판단이 드는 분야에서는 예외이다. 그러나 일본은 연령별 1일 노동시간 상한선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아동 등 청소년이 연예활동을 하려면 부모나 친권자의 동의서, 학업에 지장이 없다는 학교의 증명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노동기준감독소장에게 허락을 받으면 된다[16]. 아울러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 예술인의 노동이 금지되며 주간 노동시간은 40시간 이내, 1일 노동시간은 7시간을 넘을 수 없다[17].

수면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항도 마련되어 있다. 야간이나 심야 및 새벽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개시 시간이 오후 9시로 우리나라의 오후 10시보다 1시간 이르다. 따라서 가요 시상식 같은 대형 이벤트를 오후 9시 이후에 생방송으로 한다 해도 청소년은 일절 나을 수 없다. 아역 배우의 경우 1일 노동시간이 6시간을 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에 45분간의 휴식을 취야 한다. 학업에 지장이 없다는 학교의 증명서가 발부된다는 것은 학교에서 정상수업이 가능하거나 별도의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경우 대중문화예술 활동이 허용되는 최저 연령과 수면권·건강권, 그리고 학습권 보장의 절차와 방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구체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비교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선언적 규정이 다소 많고 추상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령, 미국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

법(Fair Labor Standards Act)」[18](1938)에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연기자의 노동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법에 세부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한 캘리포니아 주[19]와 텍사스 주의 경우 생후 15일부터 18세까지를 미성년자(minors)로 규정함으로써 최소한 생후 15일이 지나야 연기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다[16][20]. 뉴욕 주[21]에서도 18세 미만의 청소년 연기자가 일을 하려면 당국으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 양분하여 노동시간을 각각 주당 35시간미만과 40시간미만으로 규정했지만, 미국은 연령이 높아지면 조금씩 노동시간의 상한선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연령대별 노동시간을 세분화하여 차등적으로 규정하였다. 노동시간 상한선은 각각 생후 15일~6개월미만은 20분, 6개월~2세미만은 2시간, 2세~6세미만은 3시간, 6세~9세미만은 4시간, 9세~16세미만은 5시간이다.

미성년자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일을 할 경우 출연자, 보호자, 고용주 등 3자가 동시에 노동관련 부처의 허가를 받도록 심사절차를 엄격히 규정하였다. 특히 인격 보호를 위해 만 16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 외설 행위나 부도덕한 내용의 예술활동 참가를 금지하고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줄타기, 체조, 승마, 곡예 등의 연기는 전면 금지시켰다. 수면권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는 오후 10시30분~오전 5시, 만 13세미만은 오후 10시~오전 5시의 노동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수업이 없으면 밤 12시30분까지 일을 하도록 허용하였다.

학습권 보호 조항도 입체적이다. 학생이 작품에 출연할 경우 위의 3자 외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모나 보호자, 그리고 한명의 현장교사와 한 명 이상의 간호사가 촬영장에 동행해야 한다. 학생이 촬영으로 결석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스튜디오 교원(studio teacher)' 제도를, 뉴욕 주에서는 교원면허를 가진 교사를 활용해 보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스튜디오 교원은 주의 노동담당 장관이 공식적으로 자격을 부여한 전담 교사로서 일반적인 학습지도 외에 아역 연기자들의 건강, 안전, 도덕 문제도 함께 돌본다. 뉴욕 주에서는 미성년 예술인이 2일 이상 일을 하기 위해 결석한 경우

교원면허증을 가진 교원이 지도를 해야 하는데, 이는 「연기자 교육과 신탁에 관한 법」(2003)에 규정되어 있다[22].

영국 역시 「어린이청소년법」(1963), 「교육법」(1996), 「어린이노동보호법」(2000) 등에 청소년 예술인 노동 규정을 담고 있다. 연령별 노동시간과 최소 휴식시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공연이나 작품 제작을 할 때 제작자는 하루 최장 3시간 30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휴식은 다음 작업시작 전까지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5세 미만의 경우 휴식이 없는 공연은 최대 30분을 넘지 못한다.

1일 노동시간 상한선은 5세 미만은 2시간, 5~9세는 3시간, 9세 이상은 4시간이다.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도 미국처럼 엄격하다. 14세 이상이 작품에 출연하려면 학교장의 동의를 얻고 촬영·공연 21일 전까지 거주지 교육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학습 계획과 방안을 짜임새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동은 촬영 현장에서 돌봄이를 하는, 이른바 ‘샤프롱(chaperone)’이란 보호자를 동행시켜야 한다. 작품 출연을 하는 학생들은 하루 최대 3시간의 개인교습을 받아야 하며 심층 학습을 위해 개인교습을 받는 반의 학생 수는 6명 미만이어야 한다[16][17].

독일의 경우도 청소년들의 대중문화예술 활동 요건과 절차가 무척 까다롭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령 제한이다. 이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성장을 고려하여 3세 미만의 아동은 작품출연 등 활동이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연령별 공연 및 촬영시간은 3~6세는 하루 2시간, 6세 이상은 하루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5세 미만이 작품 활동을 하려면 친권자의 서면 동의,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의사의 소견서, 안전예방 조치, 수업권 확보 협약서 등을 덧붙여 해당 주 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연소자 노동 보호법」(1976)에 명시되어 있다.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정교사는 부족한 학교수업을 보충 지도하고 미디어 및 교육 전문가는 작품 대본을 인권·교육적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청소년 예술인들이 일반 교육과 문화 예술 교육을 잘 조화하면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전」과 「노동협약」에 따라 16세 미만의 경우 사전에 제작 주체가 지자체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학교장의 허가서, 업무 명세서를 내야 한다[16]. 성장기 보호를 위해 3개월 미만의 아동은 공연, 연기 등의 작품 활동이 불가능하다. 라이브 공연 무대의 경우 9세를 넘어야 출연이 가능하다. 수면권 보장을 위해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는 미성년자의 노동을 전면 불허하였다.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 최대 노동시간은 생후 3개월~3세는 1시간, 3~6세는 2시간, 6~11세는 3시간, 12~16세는 4시간으로 제한하였다[17]. 청소년들이 예술 활동을 할 때 학교장의 허락을 먼저 받도록 한 것은 학습권 보장 장치를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는 학생의 학습 진도를 살피며 자율적으로 관리할 책무를 지니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V. 맺는 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입법과 시행은 한류의 중심국이자 한류 콘텐츠를 미래의 먹거리인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매우 상징적인 일로 평가된다. 처음으로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인권과 노동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심사보고서[14]에 제시된 것처럼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등을 보장한 법률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석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성장납과 성매매 알선, 노예계약, 수익의 편취 방지 등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내용의 반영 면에서는 충실하였지만 대체로 구체적인 실천 규정보다 선언적 내용이 많아 구체성, 체계성, 예술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청소년 인권 보호와 노동시간 제한의 차원에서 그간 병폐로 지적된 성장납 예방, 불공정 거래의 시정권고 기능, 보호자나 대리인의 수익편취 금지 등의 조항을 잘 담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선진국들

과 달리 노동제한 시간을 나이별로 두 그룹으로 나눠 적용하는데 그쳐 성장주기를 고려한 노동시간의 단계별 차등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아울러 동물 올라타기, 곡예 연기 등 구체적으로 금지해야 할 '위험한 연기' 사례를 명시하지 않은 허점을 드러냈다.

둘째, 수면·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는 외국 사례를 절충하여 노동금지 시간을 특정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면권 보장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켜 각 권리를 보장하였다. 아역 배우 출신들의 청소년기 발육과 성장이 원활치 못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당한 조치이다. 그러나 휴식기간 규정,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 보호자 동행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구속성이 없는 법률로 만들어 놓았다. 청소년이 나오는 TV나 영화의 야간·새벽 촬영은 지금도 비일비재하다. 이들이 출연하는 연극, 뮤지컬, 콘서트의 야간 공연은 보통 빨라야 오후 10시 이후에 끝난다. 때문에 공연현장과 체계적인 연계나 협의 없이 야간 노동금지 시간을 규정한 뒤, 현장의 반발을 우려해 처벌조항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셋째,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는 학습권 보장 관련 조항을 계약 내용에 명시토록 했으나, 선언적으로 단 한 줄의 언급에 그쳐 이 역시 공연계 및 교육 현장과의 연계성과 적용성을 결여하였다. 입법이 시급해 교육현장의 준비가 미진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의 적용성과 기대 효과를 고려하면 학교장의 허가, 보충교육, 현장교사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관련 법률은 그간 이슈가 되어온 입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으나 전체와 각론, 각론과 각론의 연계가 완전치 못한 데다 예술 및 학교 현장의 적용성이 미약해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명시해 개정해야 향후 법의 법적 효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통과되어 청소년 예술인의 보호조항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문화예술 현장에서 법의 홍보와 계도에 충실하고 미비점 보완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법률 내용에 모호한 부분과 미비하다고 지적된 부분들에 대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입법 보완 과정에 반영하

여야 한다. 아울러 이 법률과 연계된 필요한 제도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문화산업의 건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지정순, “TV 오락 프로그램 속 아동(청소년)의 현주소”, 한국언론학회 주최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과 미디어 윤리 세미나’ 발제문, pp.2-7, 2009(9).
- [2] 이영주, “방송사의 아동(청소년) 방송출연 가이드라인 규정 방안”, 한국언론학회 주최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과 미디어 윤리 세미나’ 발제문, pp.32-42, 2009(9).
- [3] 김규한, “‘도가니’ 계기로 아역배우 보호장치 마련되나?”, 맥스무비, 2011. 9. 30.
- [4] 김여라, “어린이 및 청소년 방송출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Vol.684, pp.1-4, 2013.
- [5] 김봉석, 박지웅, 황준원, 곽영숙, 반건호, “피아제의 인지발달적 측면에서 영화가 아동배우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소아청소년정신의학, Vol.24, No.2, pp.65-70, 2013.
- [6] 홍성택, 오진호, “연극배우의 심리적 지원에 대한 인식과 발전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3, pp.220-229, 2011.
- [7] 황성기,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한림법학 포럼, Vol.12, pp.31-63, 2003.
- [8] I. George, *Child Labour and Child Work*, New Delhi: Ashish Publication House, pp.177-182, 1990.
- [9] D. Hesmondhalgh and S. Baker, “Creative Work and Emotional Labour in the Television Industry,” *Theory, Culture & Society*, Vol.25, No.7-8, pp.97-118, 2008.
- [10] S. Bhattacharjee, “Sophisticated Work Done by Children Labour: An Overview of Children Working in Indus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Humanities, Arts and Literature*,

Vol.2, No.6, pp.45-52, 2014.

[11] A. Milman, "Teenage Employment in the Hospitality Industry: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Vol.23, No.2, pp.195-205, 1999.

[12] 박석철, "학습권 보호·금지행위 등 실효성 있는 규정 필요", *신문과 방송*, Vol.2010, No.10, pp.74-77.

[13] 유희정, 김봉석, 황준원, 박찬민, 홍민하, 반건호, "영화와 동화에 나타난 소아의 외성적 사건과 탄력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Vol.24, No.2, pp.71-77, 2013.

[1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률안 심사 보고서*, 2013(12).

[15] 구승신, 정옥희, 장성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와 정신 건강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9, pp.225-237, 2011.

[16] 박석철, "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 사례", *한국언론학회 주최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과 미디어 윤리 세미나' 발제문*, pp.11-30, 2009(9).

[17] 労働政策研究, 研修機構, "諸外國における年少労働者の深夜業の實態についての研究: 演劇子役等に從事する兒童の労働の實態", *労働政策研究報告書*, Vol.62, pp.1-380, 2006.

[18]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Fair Labor Standards Act: Child Labor*. (<http://www.dolgov/whd/childlabor.htm>)

[19] State of California,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DLSE): Information on Minors and Employment*. (<http://www.dir.ca.gov/dlse/DLSE-CL.htm>)

[20] E. Jacobson, "A Comparative Study of Texas and California Statutes, Regulat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Provisions Regarding Employment of Minors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Texas Entertainment and Sports Law Journal*, Vol.9, No.1, pp.7-19, 2000.

[21] New York State, *The Child Performer Education and Trust Act of 2003*,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Labor Standard: Child Performer*. (http://labor.ny.gov/workerprotection/laborstandards/secure/child_index.shtml)

[22] Screen Actors Guild(SAG), *Young Performers Handbook*, Screen Actors Guild Inc, 2010.

저 자 소 개

김 정 섭(Jeong-Seob Kim)

정희원



- 1996년 2월 : 한국외국어대 영어학사(영어학 전공)
- 1995년 ~ 2009년 : 경향신문 정치부·경제부·기획취재부·사회부·문화부·미디어부 기자
- 2009년 8월 :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문학석사(방송영상 전공)

- 2013년 8월 :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언론학박사(미디어·엔터테인먼트·아티스트 경영 전공)
 - 2012년 3월 ~ 현재 : 성신여대 융합문화예술대학 미디어영상연기학과 겸 문화산업대학원 교수
- <관심 분야> : 배우 및 아티스트 경영, 미디어·엔터테인먼트·공연산업, 문화예술정책